

수험번호	
성명	

(2)교시(과목)

13/9/17/105 [495]

(2023)년도 (1과 보인사)시험 답안지

과 목 명	특 이 병
-------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내지(16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나.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는 시행년도 · 자격시험명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채점 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3.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표시하시기 바랍니다. (X표시 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라. 일반 사항

1.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야백” 이라고 써야합니다.
3.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4.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란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 에는 답안지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 2권 중 1번째)

[출제-1]

13/30

I. 실용 (1) 2,516-

1. 출제의 소제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정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333제1항)

2) 한편에서, 특정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X'에 대해 공중 발명과 누락 ② 'XY'에 X가 포함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발명'의 판단

(1) '발명'의 의미

판례는 발명을 한 사람과 특허를 받은 사람 사이에 '발명'의 판정을 위하여, 특정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공중 발명의 실질적인 기법과 각각의 발명을 비교한다.

(2) '공중 발명'의 판단

1) 판례는 공중 발명에 대해 발명의 실질적인 기법과 공중 발명의 실질적인 기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2) 기술의 차이의 내용이나 각각의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차이에 따라 발명의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발명의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3) 기존 발명에 구분 발명 등 구분

판례는 기존 발명에 구분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구분 발명의 기술적 사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보통은 채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과외
수익을 보기를 도와 주어 있다면 기술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 준다.

3. 실용의 역할

1) 'X'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는지

'A'는 과실 특허권 권리를 본 기술상 권리에 기여한 사람
따라서 공중 보충한 B와 C에게 공중 권리가 있다.

2) 'X+Y'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지는지

1) X의 발명으로 도와 주어 발명가인 B가 특허 권리의

2) B가 X의 기술과 보통은 채용 가능한 발명인 B와 C에게 공중 권리가 있다.

II. 실용 (2) 8/17

1. 발명의 소개 1/2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중 보충한 공중과
모두가 공중으로 특허권을 부여한다. (제44조)

2) 실용 (1)에 기재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B와 C에게 공중
권리인 B, A, B. C의 공중 보충에 따라 발명
사과. 특허권 공중 보충 공중과 사에 관계 있다.

2. A, B, C 공중 보충 발명 1/2

(1) 위와 같이 한다.

공중 보충한 발명 위와 같이. 즉 공중과를 두 가지로
공중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발명가에 제공하여 준다.

발명 권의 권리 (제 33조 제 1항)에 해당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가지

1) 권리 개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은 개시권과 발명권 4가지 중 2가지는 비. 실시권 개시와 실시권 권리가 부여
4가지 권리 받을 수 있다 (제 33조 제 1항)

2) 실시권 4가지 개시

판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4가지는 실시권으로
발명권 실시권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3) 실시권 4가지 판례

판례는 특허권과 실시권 상충관계에 해당할 때는 실시권
특허 발명권이 기여한 공로 - 출원 절차 등 기발 발명을
공로만으로 인정하여 판권 부여가 된다.

4) 권리 불복의 4가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익상 또는 그 권리 불복
필요를 인정하여 취소하는 다른 공익과 특허 공익을 불복
판다 (제 31조 제 3항)

(3) 소결

1) 특허 발명 'X'의 실시권 개시

발명 'X'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중발명가
2가지에게 공로 개시 권다.

2) A에게 30%의 실시권 4가지 개시

특허권은 설계 사권을 보호한다. A가 B와 C의 발명에 대하여 가발 특허권을 등록한 후 B와 C가 특허권자인 A의 계속된 노력으로 유사한 개량 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낼 수 있는 권리 발권을 설계자만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A·B·C가 공동으로 발명하면 여러 명의 특허권을 낼 수 있다. B와 C가 공동 발명 하였으므로 가발 발명 설계에 대해 각각 권리권을 부여 하겠다. A에게도 X의 특허권을 낼 수 있는 권리 권을 인정한다 볼 수 있다.

3) 공동 출원의 특허

A에게도 권리 권을 인정한다. A·B·C는 특허권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허 출원 권은 인정된다.

2. 특허권의 귀속관계

1) 특허권 출원의 성질

- 1) 공해 특허권 출원을 할 경우 출원권은 있는 자에게 인정한다
- 2) 다른 공해는 특허권 출원 시 가해자는 아닌 자인 등의 경우는 특허권자 부재시 출원권은 출원권자에게 인정되고, 출원권자가 부재 시 공동 발명자 중 가해자가 출원권을 형성하여 특허권을 출원할 수 있다. 이를 공동 발명 권으로 인정하여 특허 발명에 관한 모든 사항 발명권자에게 관련 권을 인정한다

각종 조건으로 하여 특허권 공표의 원칙이다.

3) 명세서 제1항으로 청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특허청장 또는 A.B. (는) 특허권을 부여한다.

나) 2항의 규정

특허청장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항의 구성요건이 그 2항에
기재된 구성요건과 다르 (명세서 제2항 제2호) +1

(3) 소결

1) A.B. (는)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 청구항의 구성요건이
특허청장 2항에 기재된 구성요건과 다르다.

2) 다만, 특허청 제1항에 기재된 청구항의 구성요건이
특허청장 2항에 기재된 구성요건과 다르 (제1항 제2호 제24호)
라고 할 때 특허청장 2항에 기재된 구성요건과 다르
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제24호) +2

IV. 선택 (3) 2017

1. 문제의 소결

01511

1) B가 (X+Y)에 대해 특허청장 특허청에 의해
특허를 부여받았으므로

2) B가 특허청장 특허청에 의해 특허를 부여받았으므로
대중에게 특허의 내용을 알릴 수 있다

3) B가 (X+Y)에 대해 특허를 부여받았으므로
특허청장 2항에 기재된 구성요건과 다르다.

2 B에게 특허 청구권 발생

(1) 문제 3.

특허권자는 기권 없이 실시권 타락 가능하며 X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실시권 무효화할 수 있다, B에게
실시권 부여된 D의 실시가 공표가 전의 가치 상실
(기권권 상실) 주장이 옳은 것임에 따라 B의 문제 풀다.

(2) 1기권권

1) 제 4항 4항에 의해 특허권 관련 권리는 모두

귀속된 권리에 대해 기 3개가 실시권자와 3권권제
실시권자의 양자간 의해 실시권자의 권리권한 통제 4개
물품 생산하는 경우 권리가 양자 4개 2개

기 1기권권으로 공표가 전 1년 제 4항 기 3개에 의해
타락한다. 권양 실시권자에게 ~~부족~~ ^{공표} 실시권자의 정제
4년 의해 ~~4~~ 기 3개에 의해 3년 공표가 전의 실시
장담권은 존재 없다

(3) 소결 - D의 권리 행사

1) 공표가 전의 실시 가능권은 3년 이내 3년이며 3년
불기 4년이 되는 법규정에 의해 3년 3년 3년 관련 권리의
1기권권 타락하여

리따라서 D가 B에 대한 기권은 정제권 A.B.C
특수권 권력 제정하여 3년 1기권 4년 3년 4년
권력 제정한다.

15/5

3. B가 단독 지식 청구권 인정

1) B에게 'X+Y' 권리 청구권 인정 단독 주장 불가

2) 마찬가지로 1기권으로 청구권 'X'의 경우 공과가대로
청구 가능

3) 그러나 4항 인용이 인정되지 않음

아니!

[문제-2]

9/20

I. 문제(1) 5/110

1. 문제의 소개

아니!

1) 특허법 제 23조의 2 제 1항에 따라 특허권. 즉 권리
청구 가능

2) 특허법 제 23조의 2 제 2항에 따라 청구 가능

3) 특허법 제 23조의 2 제 3항에 따라 청구 가능

2. 권리 주장에 관한 쟁점

(1) 특허의 권리

특허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사적 권리로서
특정 발명물에 대해 특허권자가 개척한 사물에
대하여 권리 주체로서 사물 청구권 인정
주체는 개척한 사물 청구권 인정. 권리 주체
특허권자가 개척한 발명물에 대해 권리 있다.

[문제 2]

큰 큰 B가 무조건 큰 B, 큰 B는 B가 큰
은 B가 B에 대해 필요한 B가 충분하다이다.

2.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1) 관계식 기호의 변화

1) 관계식 기호와 같은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2)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2) 관계식 기호와 관계식 기호 good!

1)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2)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3) 관계식 기호

관계식 기호 B가 B인 경우 B가 B인 경우

4. 실용의 기법

- 1) ~~원격적으로~~ ~~조각~~ ~~4차원~~ ~~8차원~~ ~~금속~~ ~~재료~~ ~~부속~~
- 2) ~~사~~ ~~조각~~ ~~기법~~ ~~가~~ ~~원~~ ~~판~~ ~~장~~ ~~중~~ ~~간~~ ~~이~~ ~~판~~ ~~4~~ ~~원~~ ~~상~~ ~~조~~ ~~각~~ ~~기~~ ~~법~~
- 3) ~~다~~ ~~원~~ ~~조~~ ~~각~~ ~~기~~ ~~법~~ ~~4~~ ~~차~~ ~~원~~ ~~에~~ ~~게~~ ~~금~~ ~~속~~ ~~재~~ ~~료~~ ~~를~~ ~~부~~ ~~속~~ ~~한~~ ~~다~~

사/조각

II 실용(2)

3/10

1. 실용의 소개

- 1) ~~의~~ ~~실~~ ~~용~~ ~~기~~ ~~를~~ ~~나~~ ~~가~~ ~~특~~ ~~정~~ ~~의~~ ~~성~~ ~~질~~ ~~X~~ ~~조~~ ~~각~~ ~~기~~ ~~로~~ ~~지~~ ~~양~~ ~~한~~ ~~다~~
- 2) ~~무~~ ~~조~~ ~~각~~ ~~기~~ ~~의~~ ~~원~~ ~~리~~ ~~에~~ ~~기~~ ~~반~~ ~~영~~ ~~사~~ ~~를~~ ~~나~~ ~~타~~
- 3) ~~은~~ ~~실~~ ~~용~~ ~~기~~ ~~의~~ ~~성~~ ~~질~~ ~~이~~ ~~조~~ ~~각~~ ~~기~~ ~~의~~ ~~성~~ ~~질~~ ~~과~~ ~~다~~ ~~르~~ ~~는~~ ~~다~~

2. 실용의 종류

(1) 물리실용의 종류

원리는 물리적으로 작용하는 각 구성요소를 개별 부품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부속을 구성한다.

(2) 기계실용의 종류

원리는 두개 이상의 부품 각각의 구성요소를 일괄하여 작용하게
한다. 작동과 원리와 구성요소를 통합한다.

(3) 화학의 종류

Y는 두개 이상의 원자가 구성된 구성요소와 부품 각각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1) 원리 (2) 물리실용 (3) 기계
실용 구성요소를 구성한다.

3. 무조각기의 원리

(1) 무효판결 취소

판례는 무효판결 확정으로 특히 소멸시효 완성판결에
있어서 권리회복 청구 불가하다 한다.

(2) 소멸시효 이익 회복

1) 법원은 소멸시효에 관한 소멸시효 4개의 소멸시
효판결(기판력)을

2) 판례는 소멸시효는 법원이 개량수행한다 한다.

(3) 소멸시효

변경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4 소멸시효 판(판결)을 한다.

4. 권리회복 청구

(1) 양도판결

판례는 무효판결 확정 후에도 양도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

(2) 권리회복 청구

판례는 권리회복 청구판결은 양도판결 확정 후에도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한다.

(3) 과잉판결에 대한 항변

판례는 과잉판결에 대한 항변은 양도판결 확정 후에도
항변판결은 권리회복 청구에 대한 권리회복
청구 수 없다 한다.

5. 소멸시효

(1) 권리회복 청구 - 소멸시효

① X는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② X는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③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2)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① X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② X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X는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③ X는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④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3)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X는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문제 3]

I 변형 (1)

1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1) X는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2)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2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1)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2) 변형은 X와 같은 것은 아니다

판례는 특허법원이 소청심 심판판 등 행정심판 판례와는
나름에 따른 개별 특허법(각각 권리범위 인정권 속 권리
범위. 이러한 법리가 권속심 심판판까지 적용되는 것은
사실로 권속심 심판판이든 권리범위 부각되지 않는다 한다

(3) 권리범위 대

1) 판례는 무효심판청구 소의 인용 유무로 권리범위

2) 무효소위 명백한 경우 개별 권리범위 인정판결

권리의 인정 유무로 특허법 부각에 배척하여, 실정권 인정
강화하는 정판에 따라 인정할 것은 근거 없이 기판
권리범위는 권리범위로 통용될 수 있다

3) 권리범위 인정 또는 배척 판결 법원은 소의 인용 유무 판결
사유에 권속심 심판판 여부, 권리범위의 권리 인정권 속
인정판결

4) 소의

판사법원 소청판결 특허 권속심 심판판 권리범위로 권리
인정판결 유무에 의거 판결 타당하다.

3) 권리범위 확정 판결의 경우

(1) 판결

1) 특허 권속심 심판판 당판소로 권리범위 부각 소청판결 판결
여부 유무에 불이판결판 바와 같다.

2) 다른 권리범위 확정판결은 당사기간 구별로 권리범위 확정
판결 판사법원소청판결 달리 당해 특허권 부속판결

작성대상 범위에 따라 2 개로써 보충된 작성자가 같은 경우
 3) 권리범위 작성 소관 개수로 심사 불응 소수 이상과 같은 권리
 내용 구성 가능을 각 검토한다

(2) 리빙성 범용 권리행사 가능

1) 공익성 (그해판에게 부여의견)

특허 판례 부여의견은 리빙성 범용 원재는 부호 2번과
 3번 주제가 중복된 것으로 그 권리범위 상정표 수 2와 4에
 기한 권리행사 불응판결은 원판결과 리빙성 주제가 2와 4
 범용주제. 권리소급 주제는 이에 기한 권리행사 허용되지
 못는데 권리범위 작성 소관 개수인 허용판결 수 2와 4, 이
 2개 판결이 별 상관 없다. 심판결 4개이다.

2) 복성성 (그해판에게 과속의견)

특허 판례 과속의견은 리빙성 범용주제로 부호 2와 3번
 주제를 일응 유권판결로서 권리범위 작성 소관 개수 4에
 대해 판결 2판결 별도 부호 2와 3번을 중복 배리 판결 부호
 2와 3번 주제를 복합 수 2판결. 부호 2와 3번의 복합 판결
 부호 2와 3번 주제를 복합 주제를 복합 주제를
 리빙성 범용 주제를 복합 판결 복합 판결 복합 판결
 심판결 4개 중복이다.

Wow!

3) 검토

리빙성 소관 개수 기한 수종으로 복합 판결 복합 판결
 수를 중복이다. 일수 범용 주제를 복합 판결 복합 판결

필수 사항으로 다룬다. 라당근

6.5/9

(3) 4는

권리범위 확충을 위한 변경 신청 가능

4. 1문의 변경

권리범위 확충을 위한 변경 신청 (3항 라당근)
권리범위 확충을 위한 변경 신청

1.5/4

II 1문의 2

8.5/15

1. 1문의 소개

1.5/2

1)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기 3가 대량으로 판매 (2)
1183 기 (18) 무시한으로 신청 가능하면 18는 통상적인
계당근

2) 실시 계약에 따라 14.3.1부터 14.5.21까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약 100명의

3) 특히 무로출로 100명으로 500명의 14 (1000명)
사업에 따라 계약으로 500명의 14로 100명의
라는 리 받게 된다.

2. 실시 계약의 도록 소액 소액 여부

(1) 무로출로 100명의 500명의 14

현재는 특히 14는 무로출로 100명의 500명의 14

따라서 실시 계약을 통하여 500명의 14로 100명의
사업에서 개별적으로 100명의 14로 100명의

(2) 원시적 선행능력 여부

판례는 특허가 소위 소멸가능하다로 한다면 원시
계약의 원시적 선행능력 요건은 본질적으로 원시
계약금 지급권은 원시적 계약에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소멸가능은 해당 선행능력 요건으로 보아
타당하다 한다.

(3) 사건으로 인한 권리 갱

판례는 특허권 소멸의 소위 소멸가능은 소위 소멸가능
으로 한 증거의 여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 특허권 소멸 권리 갱

판례는 특허는 본래 특허권 소멸 가능 내지 만
원시계약 체결 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시
계약에 의해 공정한 사상이므로 원시적 보충 권리를
원시 계약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good!

(5) 사본의 경우

1) 원시적 선행능력에 대한 논의

특허 소멸소멸 시 원시계약은 소멸 가능하므로 특허권
선행능력에 논쟁의 여지는 판례는 본래 원시적 계약에
대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시적 계약의
특허권 소멸에 의해 권리 행사가 불능이 되거나
국가에게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2) 따라서 사본과 같은 동등 원시적 계약 기권에 대해

비대칭 드러난 표현 호칭 건물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② 다른 중상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2) 소견

A와 B의 계약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9.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1)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2) 소견

A의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신뢰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뢰]

수험번호	23010005
성명	

(1)교시(과목)

(2023)년도 (1과 2023) 시험 답안지

과목명	특허법
-----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내지(16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나.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는 시행년도 · 자격시험명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채점 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3.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표시하시기 바랍니다. (X표시 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라. 일반 사항

1.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야백” 이라고 써야합니다.
3.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4.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란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에는 답안지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 2권 중 1번째)

문제 4]

10.5.10

J. 문제 1) 5.5.10

1. 문제의 소개

1) A의 특허청구 범위에서 B가 실시할 수 있는 실시예를 판정하는 문제이다

2) B가 A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실시예인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B가 A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실시예인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2. 문제의 풀이

(1) ~~원래 판례에 따른 문제~~

1) ~~원래 판례에 따른 문제~~ B가 A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실시예인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B가 A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실시예인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2) 다른 실시예에 대한 판정 문제이다

(2) 판례의 판정

1) 원래 판례는 해당 기술은 특정한 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B가 A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실시예인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2) 다른 판례는 B가 A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실시예인지 판정하는 문제이다.

1. 물체의 무게

- 1) 두꺼운 것은 두께가 큰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가벼운 물체
 특히 평평하게 놓을 때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기압)
- 2)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 두꺼운 것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가
 표면적이 클수록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2. 공기 저항의 영향

- 1) 공기 저항의 영향
 공기 저항은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두꺼운 물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압)가 된다.

- 2) 공기 저항의 영향
 공기 저항은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두꺼운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기압)가 된다.

3. 물체의 무게와 공기 저항의 영향

- (1) 공기 저항의 영향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가벼운 물체
 보다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 (2) 공기 저항의 영향
 1)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가벼운 물체
 보다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 2)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가벼운 물체
 보다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물체가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수험번호	23010005
성명	

(2)교시(과목)

16.5/8/13/12.5 50

(2023)년도 (12월 20~24)시험 답안지

과 목 명	상 포 법
-------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내지(16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는 시행년도 · 자격시험명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채점 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대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3.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표시하시기 바랍니다. (X표시 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라. 일반 사항

1.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야백” 이라고 써야합니다.
3.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4.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란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 에는 답안지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 2권 중 1번째)

[모의-1]

16.5/30

J 실문 (1) 55/10

1. 모의의 소개

1) 상표에 대한 상표 심판 결정권자를 대하는 능력이 같은 사람 출구에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 (기 150기 2명).

2) 본 규정은 상표 간 모의. 기록 범위 위한 심사제리 기록을 규정된 것 바. 출원인 A의 상표에 대해 기결정 불복심판에서 기결정 후 있다 상표 결정권자에 이득 중립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무효심판 신청할 경우 모의 심판 위임 원인으로 심사제리 기록 범위를 지리지 않는다.

2. 기결정 불복 심판의 심사제리 기록 범위

(1) 심사제리 위임한 경우
무효 심판의 심사제리 위임하는 경우 해당 심판은 부가됨에 따라진다.

(2) 기결정 불복 심판과 등록부고심판

1) 규정이 '등록 심판'의 의미
판례는 심사제리 규정에서 준 심판이라. 그러나 등록부고 등록 + 준 심판을 발한다. 그러.

2) 기결정 불복 심판과 등록부고심판

① 판례는 기결정 불복 심판의 심사제리 기록 범위 중

24

무효소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안에서 양 소판은
중류가 다른 중판 소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사부
에게 의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② 생각건대, 두 소판 모두 특허소판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판에 비해 중류가 다른 중판 소판에
대해 미미한 영향, 다른 소판 등 중류 소판 중류
중류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 소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중류가 2가지
인 경우 무효소판과 달리 거절판결소판은
특허소판과 중류가 다른 소판이 아닌, 중류가
원사부에 의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3) 소판이 소판 원사부에 의해 발생
1) 특허 소판 소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류가
중류 소판은 원사부에 의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2) 미판결 소판이 거절판결소판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소판에 비해 중류가 미미한 영향이 미미하다.

3. 소판의 미미

1) 소판이 더 미미한 거절판결소판에 원사부에 의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미하다
2) 소판이 다른 중류 소판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3) 미미하다.

15/3

10/5

15/3

II 실문 (2)

11/20

1. 물건의 소개

1) B가 A는 A의 클립과 B의 A용상품과 관련하여
 상호 거래 관계에 있으며 B의 A용상품에 대해
 별도 상표를 형성 사정 있는 바.

2) 당사자간 합의된 위판을 이유로 부호수원 기권
 기소장 2022 기를 기권함.

3) 따라서 B의 A용상품과 A 클립상표 유사관계. A의
 클립상표와 B의 상품에 해당한다 기권하여
 특허심판원 판을 기권함. 2/3

2. 상품의 유사 여부

1) 유사 판단 원칙

판례는 상품 유사판단시 상품표가 외관, 크기, 형태
 관계적, 개관적, 내적요인으로 결합하여 일반 소비자
 거래과정의 직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상품 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였을 경우 소비자 사이에 상품
 출가에 대한 원. 동등 인식 효과가 있는지 여부의 판정
 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결핵상표의 판정 방법

1) 관계원칙 원칙

판례는 등 밖의 원가 또는 도형의 결핵상표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외관-도형-관념을 기준으로

위사역 판권자 조항 있다.

2) 특허권 범위

다만 1 절5호로 판례는 결과상표 중 주력상품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나 기위.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주력상품으로 인식될수있는 수평적 범위, 즉 특허가 큰게
자신 경쟁하는 직접적 관계권한을 두드려 주기에
특허권을 가지고 위사역 대비판권자는 전혀 없다판다.

(3) 특허의 성격

1) 사법적외의 권력

판례는 특허는 수동권에게 주권자에게 의지하는 후자적인
사법적 때문인 위사판권 4 개씩 발생되는 것만으로
사법적 권한이 발생된 특허권은 특허권 수권자로 판다.

2) 4년의 정5 - 13의 신사용상표

① 출원상표 물가 상승이 큰 경우나. 별조 다른 양의

② 13의 신사용 상표는 'NATURAL'과 유추 상표의 구분
차원에 비추어 'NATURAL COTTON' 1 절5호로 정제한다.

③ 구성 비율 중 20%는 수직상표에 작게 표시된 정제된
신개 별조 사법적 성격은 사정권 양으로 분리가능 가능
특허로 가능판다 비 어렵다.

④ 타판의 'NATURAL COTTON'은 작음상표와 유추
정제 비추어 수동권자에게 수동적 신사용상표 권리 발생
수 2년 4역4 사법적 권한 특허라 비 어렵다.

① 타인이 30기 지양한 mesh가 다른 구성 형태로 사별의
20기 도록 지양한다.

4) 소결

B의 사출 상품 중 도록인 mesh와 A의 클러스터 비교하면
크기 같지만 외형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명칭만 다른
유사한 관능적 표현이 지배하여 관능적으로 보일
유사성을 지양한다.

5/3

3. '타인'의 사출 상품 지양 여부

(1) 문게기

보통 구성의 지배성을 지양하려면 타인 제품에 사용
중국어 사용 준비 중인 상품에 지양되어야 하는데 B의
사출상품은 A가 준비 거래에서 중국.전체 판매로
사용 주제를 A로 할지 B로 할지 2 문게된다.

(2) 기 자가 준비 수평로 34

관능적 관능성이 사출상품 관능적 관능성이 준비에서
각각 다른 관능적 관능성 상품으로 관능적 관능성
하는 관능적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기 자가에게 다른
수준으로 기 자가로 관능적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관능성
기 자가의 관능성 관능성 기 자가에게 타인 준비에서
사용 중인 관능성 관능성 지양한다.

(3) 사별의 경우

1) 기계 구조상 상품 위동권을 부여할 의의적상 존재 여부

2) A는 B가 상품 부착권 상품을 그대로 복제 기계에서

상품. 권 부여는 불가능 위동권 부여

3) A의 디자인은 해당 상품은 B가 복제에서 사용 권리

상품 즉 타인의 사용 권리 상품에 해당권, 2/5

4. 상품의 외관

1) B는 기계 구조상 20년 동안 복사 가능하게 한

2) 신상품과 복제 상품 유사성, A에게는 타인

복제에서 사용 권리 상품 해당권, 위동권 A는 별

3) 타인은 복제 상품

3) 해당 사항에 복제 권리 복제 상품 복제 권 부여

[문제 2]

J. 상품 (1)

1) B의 상품 구조상 상품으로 볼 수 있는 타인은 복제 권 부여

2) 기타 타인은 복제 권 부여 복제 권 부여 복제 권 부여

3) 다른 타인은 복제 권 부여 복제 권 부여 복제 권 부여

1. 문제 2의 해

9. 부가된 부가어 기호 클리닉의 여부

(1) 상표법상 권리

1) (1) 제1항에서 등록번호를 달리 표시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② 부가된 부가어 아래 클리닉 또는 ③ 시술의 종류와
상표의 사용 방식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13호 규정의
기준에 위·부합하여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상표 등록번호는 부가된 부가어 판권 불게 된다

(2) 부가된 부가어의 판권

1) 판권 방법

판례는 해당 클리닉이 부가된 부가어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의 유사성, 유사성과 유사 부가어 사용, 유사성과 유사, 상표
중립 유사성 내지 정제된 기호 사용, 상표 동일·유사성 등 구체적
개별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권 여부를 판단한다.

2) 관련 민사-행정소 제기 시 판권

판례는 상표법상 전제 행정소송에 대해 구체적 판권-각종
조각과 관련 '부가된 부가어' 판권을 이와 마찬가지로 판권
부여 판례에 여러 민사-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의 일방에
판권과 불판권 문제가 다른 판권여부 판권 판다.

(3) 소수의 정수

1) A에 의해 상표. 특허 계속 권리 취득. 등록무효소송 제기. B는
나중에 제1회 소수의 무효판결 등에게 판권된 B를
판권된 판권 정제 판권 판다.

2) 상등이 권판 조판은 A에게주게만 양자 상등 지당지녀
3) A는 여러권 상등의 범상한 편승하여 상당권 29권 양을 부각
상대 들은권 202 보낸 나

4) 상등권 권판, 즉 권판에도 상등 400 지당권판.

9. 상등의 지경

1) 상사권 판판

A의 출원 기 343기 1항 29의 지당권판 기권판출리온다.

2) 다른 기권 49

'바다르 보보'에 대해 한기판 가라라 명칭 (제 343기 1항 29)나
상등기 1항을 열려나는 상등 (기 343기 1항 29). 상등권 9항
출원 (기 343기 1항 293) 출제될 수 있다.

10. 상등 (2) 3/10

1. 문제의 사례 0571

1) 甲과 같은 상등 '가마나'와 같은 상등 343기 1항 29의
상등 상등에 표기판으로 상등권 상등 판판하는 판판
리 권판리 상등 판판 (2)의 343기 1항 29의 상등권 판판
판판 나.

3) 甲, 乙, 丙 상등에 대해 권리상등 지당권 판판
상등권 판판, 판판판에 판판판 판판 상등 판판 판판 판판.

2. 판판판 판판

1) 판판판 판판 판판 판판판 판판 판판 판판 판판 판판

특히 미달-상등에 대한 상등권 및 특등의 소지권과 관계
 2) 모든 사람의 출생권이 전 동일 권리나 아닌 가라 하면
 그 비의 출생권이 다른 것임을 이로부터 알 수 있다.

3. 국외 설립 여부

1) '합계제'의 국외 설립의 의미와 판례

1) 판례는 합계제 설립 요건을 사외 출생권자를
 제외하면서 출생권 요건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법. 즉 국외
 비합계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례는 합계제 국외 설립 요건에 대해 국외에서
 영토나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합계제 요건을 충족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설립자의 출생에서 그 요건
 상해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2) 4인의 경우

1) ~~국외~~ 국외에서 출생한 4인 - 합계제 ~~국외~~ 판례에 대해

판례는 합계제 요건에 대한 판례는 출생 요건, 국외 설립 요건, 합계제

2) 국외에서 출생한 4인 모두 출생한 합계제 요건

3) 국외 출생한 4인 모두 출생한 합계제 요건

A. 판례를 제공이 대한 판례 설립 여부

(1) '합계제'의 의미

판례는 합계제 상등권 요건에 대한 판례를
 판례에 부합하여 판례를 인정한다

특허법 무상 기권권 제5

발견된 고안과 같은 가장 즉각한 상거래 목적으로 신청
하는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출품의 무상 기권권
제대로 이 법에 따르지만 상품 상거래 용 권대
생략권 제외.

05/2

(3) 소결

수권에 대해 상품상권권은 나, 무상 기권 항으로 제외 생략권.

5. 수출품의 제외

05/2

1)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2)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3)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05/1

[문제-3]

13/30

J. 수출 (1)

4/10

1. 수출용 용도

05/1

1)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2)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3)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4)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5)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6) 수출용 용도 상기 상품상권권 제외 생략권 제외.

2. '상표의 사용' 판권

1) 형식적 사용

상표의 사용이란 기호표지인상 ||로 상의 상표를이란
상표 상의인 임의, 상표에 관한 영리에 상표 표시인 임의
등을 말함

(1) 표시의 적절성 판례의 사용

판례는 표시의 적절성은 상표사용 목적과 표시의 다른
기능에 대한 데에 그 취미는 상표권자가 다른
각각의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한 사용의 적절성은
상표권의 적절성은 인정할 수 있는 것 불게리 말함

(2) 사용의 정도

1) 수단을 통해 공중의 양의 적정성을 소극적 관점에 의해
표시인 바, 상표 사용으로 보아야

2) 적정 사용인 리 불게리

9. '정당한 사용'의 판권

(1) '정당한 사용'의 의미

1) 판례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란 적정성을 위해
공중의 이익을 위해 상의에 대한 상표를 적정한 사용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라상의 상표에 사용하는 의미
리 적절성 판례의 사용은 적정한 사용인 말함

(2) 사용의 정도

1)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사용' 판례의 의미

2) 여러 상품 사용 관련된 개원이 관련 43이전

3) 동등 권리에 관한 경우나 상품에 크게 상품 표시는
거제 변경 가능하면

4) 여제의 표시는 지식 재산 관련 법률상 사용은 가능

5) 경쟁권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상표의 변경

상표의 사용 경쟁권 사용 경쟁권 사용 상표 변경 가능 상표 변경 가능
중국어 지식재산 권 변경 가능 상표 변경 가능

II. 상표

1. 상표의 종류

1) 상표 변경 가능 상표 변경 가능 상표 변경 가능

2) 여러 상품에 대한 지식 재산 관련 법률상 사용은 가능

2. 상표의 사용

1) 상표 사용의 범위

1) 표시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 표시 행위 상표 표시 행위

2) 표시행위: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 표시 행위 상표 표시 행위

3) 상표 사용: 상품에 상표 표시 행위 상표 표시 행위

수단에 상도 도식만 기재하면 권리 범위를 넓히 안된다

(2) 상도 사용에 관한 규정의 성격

1) 권리 부여

권리는 전통적으로 기 3가가지 상도 사용 저작인
사유이다, 상도 사용권 상표 또는 상도를 사용
행위를 할지는 그다지 상도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대항력이 있는지는 그은 근거리 권리 수단에 대항력 발생한다.

2) 금지

판례의 변동을 보아 상도 사용에 관한 규정 역시
출거지인 지역 내부 제한 출거지인 지역 내부, 국기
제기에 맞게 간가지 도식 사용행위 위행이 도식 사지
외에 개입한 지역. 수용 권 발생하게 정상 상기 행위
만기 작성 부인 상도 사용에 대 항 권 지 보 행
부 행 하게 되는 것 은 오 려 지 다. 이 를 제 한 출 거 지 의
위 행 은 행 위 는 상 도 사용 에 관 한 것 이
다 항 권 지 다.

(3) 사유 인정

그는 특 히 비 하여 '상도 권 을 행사 할 수 가 없 다 는 상 도
도 식 권 위 를 위 대 항 권 지 는 상 도 사용 에 관 한
행 위 에 도 관 한 것 은 상 도 사용 대 항 권 지 는 지

3. 법원의 판결

그의 크 기 회 기 판 결 판 결 상 도 사용 권 지

양으로 권리권 (내용권) 권역 권역.

05/11

II) 실문 (3)

5/10

1. 물건의 소재 05/11

1) 권리범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 대상
상표에 미치는 권리 관련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제12조)

2) 유권한 상표권자이며, 권리 범위는, 상표 사용권
보호 범의 수직적, 수평적 관련 사항에 관한 것임.

3) 9개 대대 중의 각 사용에 대해 어떤 규정 가능하리 검토함.

2. 비상표장 사용의 규정 - 제 41조 4항 1

1) 권리범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표 사용

1) 상표 사용권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표법 제 41조 4항 1)
2) 본래는 권리범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표 사용권 관련 사항에
위해 사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특별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문과 문과

2) 사용의 정

41조 4항 1은 표장으로서 '특기메르카우 마르카'를
사용한 바, 이는 사용상표인 '원산지'를 라벨의
상표와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으로 나타내어 구분
사용한 것임. 쉽게 수직적으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구분 가능함.

3. 비유사 규정 - 제 41조 4항 2

(1) 상표 비유사 구경

1) 결과상동등 경우 판례는 4 요건을 따라 대비 가능하다고 판다.

2) 여기 따라 판은 대당 '푹키 메르콜' 제의사'이서 '구식외사' 회사명의 사별된 경우 '메르콜'은 익숙할 관련 거래계에서 익숙할 관련 공부를 직감할 수 있는 상태 될 수 있으므로 '푹키'가 ~~상동~~ 표상 요건에 구경되며 '푹키와 제의 상표' '메르콜' 비유사 구경 가능하다고 판다.

3) 또한 '메르콜' 사별된 일의 경우 사별된 관공공으로 발본 수거를 영. 문로 가능 노오로 2 상표 사별된 일의 2 개로 비유사 구경 가능하다고 판다.

(2) 상표 비유사 구경

1) 상표 유사 판정은 직. 영상. 음. 생상 판에 부합리 수로 법의 따라 공제판례

2) ~~비~~ 상표 비유사 판례로 제의 상표와 생상 판에 수로 판다 비유사 구경 가능하다고 판다.

4. 도록계판 구경 - ~~비~~ 도록계판 3

(1) 상표의 도록계판

1) 상표 등 자신의 권리권과 동등성 나타내는 수로 도록계판 판례에 해 903개 (영 13)

2) 이때 상표권 발계판 판례에 따라 도록계판 판다.

24년

특정 개념에 대해 기이로 기인 소정의 부가된 특장 유무에
'구상사'로 기인 가능 한 소정의 소제 관행에 따른
사실에 해당 관행으로 드러 기인 가능 가능

1A

[B기-4]

2.5/20

J. 4문(1)

5.5/10

1. 물체의 소제

1/2

1) 특허 소장은 소정의 물체에 대해 소정의 물체
의 부속과 관련된

리 디자인과 소정의 물체의 관계 구조에 관한 상세 설명

2. 관행의 특정 물체에 소정의 사용

1) 소정의 사용의 의미

1) 형식적으로 기 23항으로 소정의 사용의 의미

리 소정의 물체는 소정의 물체의 기능과 구조상 물체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 관계에 의한다

0.5/3

2) 디자인과 소정의 관계

1) 소정의 디자인과 사용의 관

문제는 소정의 물체와 동일한 특장 소정의 사용이라 하므로

그러나 소정의 물체의 기능과 구조상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소정의 디자인과 소정의 물체에 대한 관계는 소정의 사용에 해당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험번호	23010005
성명	

(2)교시(과목)

(2023)년도 (1과 2024)시험 답안지

과 목 명	상 포 병
-------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내지(16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나.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는 시행년도 · 자격시험명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 채점 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3.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표시하시기 바랍니다. (X표시 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 라. 일반 사항**
1.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야백” 이라고 써야합니다.
 3.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4.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란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 에는 답안지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 2권 중 1번째)

앞으로 본다.

1.5/2

2) 상표권 기능 수행할 경우

판례는 디자인과 상표권 신뢰성, 비타자 관계에 관한
그의 사례를 디자인 권 수권 경쟁에 모호한 권리
관련 상표의 신뢰성 기능은 크레딧 기능 수행할 경우
에는 상표권 상으로 확정 권리로 본다.

3) 상표 사용의 판정 방법

판례는 상표권 사용에 해당 하는 상표권의 관계
상표 사용 태양, 상표의 구분, 기법, 상표의 연속
경기 등을 고려 판정 하여야 하며 관계에 상관
없음 판정 가능 한 판정 하여야 한다.

3. 상표의 판정

1) 상표의 판정 방법

- ① 상표의 판정 방법 중 경쟁 관계 판정 하여야 한다
- ② 상표의 판정 방법 중 경쟁 관계 판정 하여야 한다
- ③ 상표의 판정 방법 중 경쟁 관계 판정 하여야 한다
- ④ 상표의 판정 방법 중 경쟁 관계 판정 하여야 한다
- ⑤ 상표의 판정 방법 중 경쟁 관계 판정 하여야 한다

3) 상표의 판정

그냥 ~~상도~~ 상도 해당지 않는 ~~판권~~ 판. ~~상권~~ 상권

1/3

II 원 (2)

기/0

1. 문건의 소개

1) 특허법 1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발명물에 대해
기명권 타인의 발명물에 대해 형평상 조정을 위하여
이른 경우 (제34조 제1항 1호) 무효판결 청구
권.

2) ~~발명~~ 발명 상도가 출원된 의 '발명'에 귀속되는 ~~권리~~ 권리
발 발명 ~~권리~~ 권리에 '발명'에 귀속되는 ~~권리~~ 권리 문건으로
특정 발명권 ~~권리~~ 권리에 관한 것임.

2. 특정의 발명권을 발명권 리 여하

(1) 제1항 1호 발명권 ~~권~~ 상도 권리 귀속 구제

원래는 ~~권리~~ 권리의 ~~귀속~~ 귀속에 관한 ~~판권~~ 판권 ~~판권~~ 판권 ~~판권~~ 판권
제1항 1호 발명권 ~~권~~ 상도 발명권에 대한 권리권 ~~권~~ 권
상도의 ~~권~~ 권. ~~상도~~ 상도. ~~판권~~ 판권이 ~~출원~~ 출원된 ~~권~~ 권
상도권에게 ~~발명~~ 발명 상도 상도권으로 ~~귀속~~ 귀속된 ~~발명~~ 발명 상도권
상도 ~~권~~ 권에 ~~발명~~ 발명 상도 상도권으로 ~~귀속~~ 귀속된 ~~발명~~ 발명 상도권

(2) '발명'의 범위

원래는 ~~발명~~ 발명 상도의 ~~권~~ 권에 ~~귀속~~ 귀속된 ~~발명~~ 발명 상도 ~~권~~ 권
상도의 ~~권~~ 권에 ~~귀속~~ 귀속된 ~~발명~~ 발명 상도 ~~권~~ 권에 ~~귀속~~ 귀속된 ~~발명~~ 발명 상도 ~~권~~ 권

(3) 4항

1) 태생 테크놀로지 국외의산 태생기술은 비록 본국에서 국외로
 이주한 관계로 비록 국외 유출이 될 태생기술은 국외
 국외 출항으로 국내 기업에게 출항권을 부여 허용기간
 신조하여 신사용으로 사용가능 하, 국내 출항권은
 본 태생기술을 출항권자에게 유출하여 출항권자 권한권한
 제 2항 본 태생기술은 1차권이 될 수 있다. / 출항권 부여
 3) 타인의 지식으로 제공된 것.

출항권 부여
 출항권자

3. 출항권 부여 *good!*
 (1) '출항권'의 판단

판례는 출항권 부여된 출항권자가 출항권 제정 출항권
 제정권 강도. 출항권 강도. 출항권 인정권 또는 국외
 신출항 사용자의 사립자와 강도. 출항권 부여 출항권자
 여는 출항권자 출항권 부여된 출항권자 강도 출항권

(2) 출항권 부여

본 태생기술과 출항권 부여 관계 고려하면 때 (태생)
 제정권 강도 부여하여 출항권자는 여가 제정권자는
 제정권 강도 부여하여 출항권자는 여가 제정권자는
 제정권 강도 부여하여 출항권자는 여가 제정권자는
 제정권 강도 부여하여 출항권자는 여가 제정권자는

4. 출항권 제정

(1) 타인 지식으로 제공된 것 (2) 출항권 제정권자 관계
 하, 특허보안원 인정권자

517

수험번호	23010005
성명	박소영

(1)교시(과목)

(20 23)년도 (1과 2023) 시험 답안지

55

과 목 명	원소소능보
-------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내지(16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나.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는 시행년도 · 자격시험명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 채점 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3.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표시하시기 바랍니다. (X표시 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 라. 일반 사항**
1.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야백” 이라고 써야합니다.
 3.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4.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란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 에는 답안지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 2권 중 1번째)

[문제-1]

I. 실문 (1)

1. 논리의 기리

광상법칙의 경우 광변위를 복대칭으로 취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크게 줄여 판별 시간 및, 그의 광변위를 복대칭으로 받아들인 그의 수평선기, 변위나 그의 대각 변위계측의(물) 있는 경우 리 크게 된다.

2. 그의 복대칭의 예

(1) 복대칭의 방식

2) 복대칭은 상계층의 재기판 층에 적용하여 광변위 재기판을 광으로써 (기4033) 원거리에서 측정 기기를 포함 (기4053) 관련 기 (기4053).

위와한 수평선은 표시된 것을 판별하여서 광사각도를 위해 수직의 수평선으로 해서야 하는 바, 그의 광변위를 복대칭으로 취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2) 광상법칙의 광변위 기리인 경우

판례는, 광상법칙의 광변위에 대해 광변위를 기리면서 적극적인 광상법칙을 수직 수평의 수. 기리 광변위 기리인 체계된 광상법칙을 복대칭으로 해서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복대칭으로 해서야 하는 수직 수평이다.

(3) 수평의 경우

그의. 그의 광상법에 대해 복대칭으로 해서야 하는

1)은 무의 기1을 일변을 포함에 대해 응수할 경우
보대라 보보상 계속될 수 있겠나. 무의 보중어는
보일 상에 대해 보중어는 9년 중량 기원에 악장
크우도 3중고 202 보나.

2)은 중변시에 무 상가 각 구리기연단 중변서
말외에 항상각 구리는 국리 중세 기제인 기1을
판별 3년 5 액수 다득 일로 무에게 정권 보보
때 202년 판별에 대개는 다득과 보대만 국리 각
가능하다.

3)다시 온 무 상에 대해 10년 일변이 판별은 구양개
무의 상은 상 일변 국리의 구양은 개신된다

(3)사상의 정수

결국 2은 기1의 판별의 국리를 구양은 202 일 보
를 상보은 상가 판별 기연은 보나.

2. 상의의 보판대상

(1) 상의각

1)당사자는 마라킹의 판별에 대해 상의에 보보할 수
있는 바, 이와 상에서 국리 보보에 대해 보나
수 있다.

2) 상에서 2은 기1을 202 판보에 대해 보나 보나
무로 보에 대해 보나 보나. 보보기 보은 202 상
보은 보에 보보는 보나 보나 보나

(2) 판권의 확장 4기

1) 확장

특수한 당사자가 복제권을 갖 수 있는 판권 등
주요한 경우 특수한 경우를 비롯하여 판권의
확대되어 기록적인 판권까지 확장된다고 본다.

2) 판권의 예외

판권은 본래의 모든 복제권으로 비롯하여
복제권으로 다루어 모든 이상 이상 복제권
실패적으로 권리 부여를 ~~변경~~ 확장된다고
한다 판권이다

3) 검토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변형에 대한 가능성 또한
이므로 판권은 ~~변경~~ 판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나, 판권은 매우 다양하다.

(3) 4명의 경우

상당한 판권이라고도 다루어 모든 나 2명은 ~~복제~~ 확장
권이 상응하여 있다. ~~복제~~ 1명은 본래의
상당한 실패적으로 권한다.

4. 상응의 판권

1) 판권과 ~~복제권~~ 권속 상응의 권리

1) 상응의 판권은 ~~복제권~~ (기4243)와 같은 상응의
(기4243)가 있는데, 판의 상응의 판권은 ~~복제권~~ 변형

기계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이는 불법적 상거래에 해당한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점까지 상거래와 다르게 판권의
미리 영장이 있을 때 인정된다.

(2) 상거래에 대한 판권

- 1) 타 상표를 행사하기 위하여 상거래를 강요하여 받은
때, 즉별한 사정 있는 한 해당 상표 권리 주체는
각별한 주의가 있다.
- 2) 타의 불리 결과 해당 상표가 사용 되는 것은
불법적인 상거래이다.

(3) 사명의 경우

형식상 별다른 기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법외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거래로 그들 호의를 상호
인용 관계에 있다. 하위상도 인정된다.

5. 불공정 행위

그의 주장 하자로 보다 강제로 강요하여 이익을
불법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데에 대해 상거래로 인정되는
상도 인정되는 바, 상거래이다.

[문제-2]

I 문제(1) < 1. 불공정 행위

A는 상거래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법적으로 상거래를

이러한 기준 법정판권은 변질권의 대상으로 A-구항에 국
 조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법정판권은 법정판권이 아닌 법정판권
 대상인 리 물체라고

2. 법정판권의 구성요소

(1) 변질권의 구성요소

변질권이란 당사자가 수급.기초는 소수자에게만 기동하여
 법원이 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구성요소에 관해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는다.

(2) 구성요소의 판결사실의 구분

1) 판결 구항에 기재하는 판결사실과 판결사실의 달리 여부에
 판결하는 지각에서 판결 판결사실을 구분한다

2) 판결. 판결하는 판결 판결사실 지각하여 판결 판결사실은
 실제판결 구성요소의 판결사실과 판결사실이다 판결 판결
 사실의 구분은 판결사실의 판결사실 판결사실 판결사실 판결

(3) 판결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적용되어야 하는 판결판권은 판결판권 판결판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3. 상소권 처리

1) 상소권의 판결

법정판권에 대해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판결판권

법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2) 권리침해의 시점으로 법정에서

판례는 권리침해의 시점 상해상 법정에서 이를 밝히는
지나지 않는 이상 권리침해를 기점으로 하여
지나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 이를 밝히는
법정에서 인정된다.

(3) 시점의 경우

권리침해의 시점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바,
법정에서 인정하는 시점의 경우 법정에서 인정한다.

4. 손해의 계산

법정에서는 권리침해의 시점으로 하여 권리침해를 기점으로 하여
판례 인정하는 바, 법정에서 인정하는 시점의 경우 법정에서 인정한다.
판례 인정하는 바, 법정에서 인정하는 시점의 경우 법정에서 인정한다.

II. 손해(2)

1. 손해의 범위

사실 관계에서 손해 범위 인정하는 시점으로 하여 법정에서 인정하는 바,
판례 인정하는 바, 법정에서 인정하는 시점의 경우 법정에서 인정한다.

2. 기판력의 발생과 적용

(1) 기판력의 발생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을 말한다.

각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끼리 직접적으로 논

(2) 사건의 경우

ㄷ는 제1회 상급으로 4등으로 B에 대하여 2회 상급하는 바
는 A에 B에 대한 제1회 상급과 양립불가능으로 4회 상급
A에 대한 2회 상급으로 4등으로 상급하는 바 4회 상급한다.

3. C-출처의 경우

(1) 즉위상수기 출가에서 편찬공기

공기 편찬은 어느 한 상수기에 대한 2회 상급하는 바
출가 불가능하다. 제1회 상급으로 4등으로 상급하는
출가 가능하다 하여 편찬공기 4등으로 상급한다.

(2) 양립가능한 경우의 경우

편찬은 어느 한 편찬공기가 4등으로 상급하는 바 4회 상급
출가 불가능하다 하여 상급하는 것은 4회 상급한다.

(3) 사건의 경우

C에 B에 대한 출가 4회, 4회하여 4회 상급 A에 대한
출가는 4회 상급으로 편찬공기 4등으로 상급하는 바 B에 대한 출가
4등으로 상급한다.

4. 사건의 경우

C에 B에 대한 출가 4회, 4회하여 4회 상급 A에 대한
출가는 4회 상급으로 편찬공기 4등으로 상급하는 바 B에 대한 출가
4등으로 상급한다. 따라서 C에 즉위상수기 출가는 B에 대한 직접적으로

II. 설문 (2)

1. ~~실질 권리~~

합성법원은 2회 국외출국에 대해 2회 국외출국수 있는
 사위 출제임. 또한 21.5.20 ~~합성법원~~ 국외출국기관기상권
 2회 2회 ~~합성법원~~ 국외출국수 있는 ~~합성법원~~ 수회 출제임
 국외출국수 있는 사위 출제임. 4회의 실질 권리 사위 출제임
 출제임 리포트임.

2. 국외출국수 있는 사위 출제

(1) 국외출국의 유형

1) 출국 기간이 90일이면 장기거주 기간이 발생하는데
 리포트는 국외출국 기간에 상관없이 사위출국수 있는
 국외출국수 있는 리포트임. ~~합성법원~~ 국외출국수 있는 리포트임.

(2) 국외출국수 있는 사위 여부

리포트는 피로에게 귀국비, 즉 소양비 등의 출국비
 리포트로 발행된 리포트 피로에게 국외출국수 있는
 리포트로 발행된 리포트 국외출국수 있는 리포트수 있는
 사위 리포트임.

(3) 국외출국의 점

2회에 소양비 등 출국비 리포트수 있는 리포트는
 리포트수 있는 사위 출제임.

3. 국외출국기관 크라 여부

(1) 국외출국기관

1) 당사자는 책보낼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날부터 23년에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기11122기112)

2) 이때 판례는 그 서류가 있는 날부터 당사가 판례의
공시상태를 이루기 전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례로 승결판은 경우

판례는 당사자 상대적이며 판례로 승결판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문서를 판례로 인정할 것 외에 권리
공시상태로 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것을 제재하는
한 이상으로 서류 입회까지 보지 않는다.

(3) 상의 경우

상대적성에게 승결판 정제로 주어 볼 수 있도록 하여
타당하게 승결 판례 상의 판례를 기록 승결판 경우
이때 판례 공시상태 방법으로 승결판 정제를 볼 수 있는
서류 입회까지 보지 않으므로 기간 인정하지 않는다. 즉 판례
공시한다.

A. 상의의 제정

소 개시 시부터 공시상태를 보지, 그에 책보낼 수 있는 서류
공시한다. 서류 입회까지 보지 않는다고 인정하게 보지
않고 판례 보지 않는다.

II 소문 (2)

1 논점의 정리

는 상호간에 쉽게 매수연락 가능하여 문제가 아니며, 여러권
결과 적법적 기와. 권리 상한 하기 정도는 본 장을 본다면 된다.

2. (의) 갈가 지어

1) C 권자의 위명

(는 사의 B에(대한 소의 기결려 발단 라이다
자신의 권리 구강하여 갈가된 바. ~~중도~~ 중립당사자
발단 공이므로 권리구강 ~~발단~~ ~~공이~~ ~~소의~~ ~~기결려~~ (기결려)

(2) 권리 구강 도해 소권

권리구강행위는 당사자의 권리와 상충불가능한 구강하여
항상 변론공방이 가능하고 변론필요 미비하다.

(3) 사의 인정

(는 항소원에 소제속 공가되어 쉽게 매수연락하여 사의
구강과 상충불가능한 구강하는 바. 갈가 소권 ~~발단~~ ~~공이~~ ~~소의~~ ~~기결려~~

3. 항소심 판권의 라용성

1) 중립당사자 사이에 미친 보편 효과

중립당사자 결과는 구명 사의의 항소심판 도해 ~~발단~~ ~~공이~~ ~~소의~~ ~~기결려~~
소 항제러는 어느 당사자의 구강에 불응하여 ~~발단~~ ~~공이~~ ~~소의~~ ~~기결려~~
다른 당사자의 구강에 불응하여 된다.

2) 항소원에 걸친 범위

중립당사자 결과는 당사자의 상충을 기결려 판례는
항소심에서 갈가한 범위 ~~발단~~ ~~공이~~ ~~소의~~ ~~기결려~~ ~~판례~~ ~~계(사)의~~
항소가 된 ~~발단~~ ~~공이~~ ~~소의~~ ~~기결려~~ ~~판례~~ ~~계(사)의~~ ~~항~~ ~~소~~ ~~원~~ ~~에~~ ~~걸~~ ~~친~~ ~~범~~ ~~위~~ ~~다~~.

(3) 4인의 경우

양으로 나와 C 계속하여 선락 체결함도 판권 있음.
 그러나 A에 대한 권의 인정여부 판권 제정 권고
 A 권보통 C 권보통이라 판권 인정함.

4. 3인의 판권

C 권보통이라 판권 인정함. (A에 대한
~~양으로 판권 인정~~ A에 대한 양으로 판권 인정함
 에 대한 판권은 인정함

[문제 4]

J. 양보 (1)

1. 양보의 권리

양보인 B 발명인이 판권 내지바, A의 권보통 권보통
 과와 나로 양보권은 권보통 발명인 발명인 권리 인정
 공동 배기되는 권리 인정함.

2. B 양보권 여부

(1) 문제 1

B는 발명인 권리 인정 '양보권' 인정함
 에 대한 권리 인정 배기되는 권리 인정
 공동 배기되는 권리 인정함.

(2) 양보권 인정 여부

판례는 발명자로서도 종사자 원상권 발생 기록은
 사원에게서 해당 발명에서 종사원이 발명하게
 라는 점에 있어 복대당성취권을 보지 않음. 사주
 영상이 아닌 그 취지에 비추어 판권지냈다.

2. **회사원의 경우**

본 발명 기록이 아닌 그 취지에 종사원이 발명권
 발생 기재가 없으므로 4회 제때 복대당성취권 인정 불수요.

3. **발명자 본인의 경우**

(1) 발명자 본인의 경우

발명권은 기술발명권으로서 그 발명권자에게 귀속됨(제45조). 해당 사원에게서 복대당으로 인해 발명권
 인정받지 못함.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판권지냈다.

(2) 복대당성의 발명자 본인의 경우

판례는 복대당성이 기재된 경우 발명자 본인의 경우
 배제되며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 또는 발명권 발생
 인정받지 못함.

(3) 사원의 경우

판례는 발명권은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판권지냈다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판권지냈다

4. **본 발명에 대한**

본 발명 기록은 복대당성취권 발생권은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판권지냈다
 제4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판권지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

수험번호	23010005
성명	박소영

(2) 교시(과목)

(2023)년도 (1과 보인교사) 시험 답안지

과 목 명	민사소송법
-------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답안지는 표지, 연습지, 답안내지(16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부받는 즉시 쪽 번호 등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나. 답안지 표지 앞면 빈칸에는 시행년도 · 자격시험명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채점 사항

1.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3. 계산문제는 반드시 계산과정,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 · 수정액 등을 사용할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표시하시기 바랍니다. (X표시 한 답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라. 일반 사항

1. 답안 작성 시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긴 경우 요약기재 가능)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 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야백" 이라고 써야합니다.
3.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4. 답안지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하며, 이 경우 먼저 작성한 답안지의 16쪽 우측 하단 []란에 "계속" 이라고 쓰고, 답안지 표지의 우측 상단(총 권 중 번째) 에는 답안지 총 권수, 현재 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총 2권 중 1번째)

II 실문 (2)

1. 논쟁의 쟁점

그의 특정권 개입은 비 해당 사육가 일정한 날에 대량 공명 누구에게 고 노 기 결 호 로 써 권 위 보 행 이 관 한 가 해 결 하 는 가 의 법 원 의 범 위 에 대 한 적 법 위 반 을 고 소 한 다.

2. 특별한 사정'의 증명 책임

(1) 특정권 기간의 기산점

당사자는 개 보 관 수 일 한 사 육 장 소 계 기 이 본 문 중 대 량 사 육 가 일 정 한 날 부 터 2 3 일 이 특 정 권 개 시 점 에 대 한 대 량 사 육 가 일 정 한 날 에 대 한 다.

(2) 사육 일 정 한 날 과 ' 특 별 한 사 정 '

1) 판 례 는 사 육 일 정 한 날 에 관 한 판 단 적 행 위 와 공 인 적 행 위 의 구 분 을 구 별 로 대 리 고 대 량 사 육 가 대 량 사 육 을 본 문 중 ' 특 별 한 사 정 ' 을 인 사 려 가 는 기 산 점 에 대 한 다.

2) 이 때 ' 특 별 한 사 정 ' 에 대 한 증 명 책 임 은 당 쪽 에 있 는 책 임 에 대 한 다.

(3) 사 육 일 정 한 날

그 로 판 단 은 사 육 일 정 한 날 을 구 분 한 다 이 때 판 단 은 대 량 사 육 가 그 날 에 일 정 한 날 에 대 한 다 이 때 판 단 은 증 명 책 임 은 당 쪽 에 있 는 책 임 에 대 한 다 이 때 판 단 은 증 명 책 임 은 당 쪽 에 있 는 책 임 에 대 한 다.

3. 사업의무 관련

(1) 사업 사랑

1) 소위 사업은 당사자의 불행, 불행으로 또는 불행
상황이나 큰 기쁨이 때때로 있는 것만, 작게 사업도

당사자가 기쁨이 아닌 사업의 기쁨을 즐긴다는 것만
(제1176조 제1항)

2) 법적으로 기쁨은 당사자가 여기저기 사업(계약)

보통의 법칙은 25 9에 의해 이원할 수 있는 것만
(제1136 조 4항)

외사영역 789

모든 사업의 주체이며 9에 의해 소위 같은 법칙이

선정된 바, 비영리사업은 영리한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의견 조는 거의 3년 이상이다.

4. 법원의 개입

주요 사도, 공법적일 또는 비 기구적인 성격이므로

타당하게 사업 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다.